



제410국회(정기임사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확인 기능 근거 마련 등〉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3468호)

■ 강병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3525호)

2023.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규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신분확인 기능 부여 근거 마련	4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사용 근거 마련	6
3. 모바일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공문서 의제	17

I. 제안경위

1. 이만회의원안

가. 발 의 자 : 이만회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07. 26.

다. 회부연월일 : 2023. 07. 27.

2. 강병원의원안

가. 발 의 자 : 강병원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3. 07. 27.

다. 회부연월일 : 2023. 07.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이만회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국문, 영문, 모바일 등의 종류로 구분하여 신청·발급받을 수 있음.

국민 대다수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 수단 중의 하나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있고,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인증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사용범위와 근거 등 사용자의 혼선이 가

중되고 있어, 확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명확하고 편리하게 제시·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운전면허 관련 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 경찰청장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운전면허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령을 근거로 발행된 운전면허증, 모바일운전면허증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운전면허증을 행사하거나, 부정행사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문서로 의 제함으로써 모바일상의 운전면허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5조의2 및 제148조의3 신설).

2. 강병원의원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 수단 중의 하나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음. 운전면허증은 국문, 영문, 모바일 등의 종류로 구분하여 신청·발급받을 수 있음.

한편, 국민 대다수가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 수단 중의 하나로 운전면허증과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입(2022년 7월) 이후 발급자 및 관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사용범위 및 근거 규정 미비로 사용자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법상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정행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범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신분 증명에 대한 효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조·변조하는 경우 등에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안전성 및 국민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신분확인 기능 부여 근거 마련

개정안들은 국가기관·공공단체·기업체 등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조문대비표>

현 행	이만회의원안	강병원의원안
<u><신 설></u>	<u>제85조의2(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운전면허소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성명·사진·주소·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u>	<u>제85조의2(운전면허증의 확인 및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등) ① 행정기관 및 기업 등에서 운전면허소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 및 운</u>

	<u>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u> <u>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u>	<u>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확인하는 경우</u> <u>2. 민원서류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u> <u>3.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u> <u>4.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	---	---

개정안들과 같이 운전면허증을 통한 신분 확인이 가능한 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운전면허증의 신분증으로서의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분 확인의 범위·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민등록법」 제25조에서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운전면허증을 통해 「주민등록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확인 사항을 동일하게 확인한 것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과의 조화를 위해 운전면허증을 통한 신분 확인은 재량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사용 근거 마련

개정안들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신청자에게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신분확인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문대비표>

현 행	이만희의원안	강병원의원안
<u><신 설></u>	<u>제85조의2(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① (생략).</u> <u>② 시·도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u>	<u>제85조의2(운전면허증의 확인 및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등) ① (생략)</u> <u>②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할 수 있다.</u>

경우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인 사항과 동일하게 확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신분의 확인 방법을 다른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확인서비스(제2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성명·사진·주소·운전면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확

③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인 사항과 동일하게 확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청·발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하는 경우 성명 ·
사진 · 면허번호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⑥ 모바일운전면허
증 및 운전면허확인
서비스의 발급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한다.

제92조(운전면허증 휴
 대 및 제시 등의 의
 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운전면
 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운전면허증, 제96
조제1항에 따른 국
 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
 증이나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
 허증(이하 “운전면
 허증등”이라 한다)

제92조(운전면허증 휴
 대 및 제시 등의 의
 무) ① -----

 -----.

1. -----제85
조의2제2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② -----

-----. 이 경우 모바
일운전면허증은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제
시하여야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득
소·정지) ① ----

This image shows a vertical rectangular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for handwriting practice.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guides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lines are light gray and extend across the full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illegible]

1. ~ 7. (현행과 같음)

8. -----

---중 운전면허증
(모바일운전면허증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의2. ~ 20. (생략)

② ~ ④ (생략)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
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
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
허증을 제출한 때)
에 주소지를 관할하
는 시·도경찰청장
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 5. (생략)

8의2. ~ 20. (현행
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
증(모바일운전면허
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은

1. ~ 5. (현행과 같
음)

② (생 략)

③ 시·도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신 설>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

① 시·군공무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 제29조제4항·제5항에 따른 긴급

② (현행과 같음)

③ -----

-----.

④ 모바일운전면허
증의 회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에 관하여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
다.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

① -----

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 의무 또는 제3
2조부터 제34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정
차 및 주차 금지 의
무를 위반한 운전자
가 있으면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제주특별
자치도의 경우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게 출석
할 기일 및 장소 등
을 구체적으로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출
을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석기일까지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
이 있다.

운
전면허증(모바일운
전면허증을 포함한
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개정안들과 같이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현황>

구분	총 계	2022		2023						
		시범 운영 (1.27.~7.27.)	정식 발급 (7.28.~12.3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발급(건)	1,561,598	87,129	877,522	86,054	80,878	121,572	78,954	74,916	76,242	78,331

<모바일운전면허증 사용처 현황>

총계	금융	공공	통신	모빌리티	편의점	무인상점	출입인증	숙박	의료	기타
95	61	9	3	3	5	5	1	1	1	6

다만, 강병원의원안과 관련하여 모바일운전면허증은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 제92조제2항과 같이 제시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할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고,

행정안전부는 실물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었으므로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법제화 필요성이 감소하여 이만희 의원안의 관련 조항(안 제85조의2제4항, 제5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비교>

구분	사업주체	근거	발급 방법	확인 범위	비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경찰청, 행안부, 도교공단, 조폐공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78조의2	→ IC면허증(실물) 발급 후 모바일에 인식하여 등록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PASS)	경찰청, 이동통신 3社	규제샌드박스 (과기정통부) ※24.6월 종료	→ PASS 앱에서 실물 면허증 촬영, 인증 후 등록	면허종별, 자격, 성인여부 등 요구 정보의 OX식 단순 확인	

3. 모바일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의 공문서 의제

개정안들은 형법 제225조¹⁾, 제229조²⁾, 제230조³⁾ 등 공문서에 관한 죄의 적용에 있어 운전면허증과 모바일운전면허증을 공문서로 의제하려는 것임.

<조문대비표>

현 행	이만희의원안	강병원의원안
<신 설>	제148조의3(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문서의 의제)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0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 법의 운전면허증(제85조의2 제2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은 이를 공문서로 본다.	제148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문서의 의제)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225조부터 제230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문서로 본다.

현재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이 현행법상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위조 또

- 1)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2)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3)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변조하거나 부정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어 범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개정안들은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 운전면허증을 위변조 및 부정사용 등의 범죄에 있어 공문서로 의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고 모바일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5